

CLOSING ACCOUNTS &
TAX ADJUSTMENT OF CORPORATION

2021 법인세 신고대비
개정 및 실무이슈

HIT THE SPOT SERIES 3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시
주요 개정세법



YOUR BEST HRD PARTNER
씨에프오아카데미
www.cfoi.kr

[HIT THE SPOT SERIES 3]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시 주요 개정세법

1 법인세분야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소득법 § 26②, 법인법 § 18)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총당한 다음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단서 신설>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총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법인법 § 18의2, § 18의3)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100% 미만 30% 이상	50%
	30% 이하	3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100% 미만 50% 이상	50%
	50% 이하	30%		50% 미만	30%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이하 30% 초과	90%		40% 미만 30% 이상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이하	90%		80% 미만	90%
	50% 초과			50% 이상	
	50% 이하	80%		50% 미만	80%

〈개정이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법 § 24, 소득령 § 79)

종 전		개 정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능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종 전		개 정	
<p>□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p>□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한 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100억원 초과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 27의2①, 법인령 § 50의2①)

종 전		개 정	
<p>□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p> <p>*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 각(리스크비용)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 (적용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p>*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추 가)</p>		<p>□ 제외 대상 추가</p> <p>(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p>*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자율주행자동차</p>	

〈개정이유〉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 81의6, 법인법 § 75의5)

종 전	개 정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7.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 10㉠)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예외법인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종 전	개 정
<p>□ 손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인건비 <p>-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p>	<p>□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p>*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p> <p>- (좌 동)</p>

〈개정이유〉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령 § 19의2①, 소득령 § 55②)

종 전	개 정
<p>□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 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30만원

〈추 가〉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령 § 31③, 소득령 § 67)

종 전	개 정
□ 수선비 세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적 지출* :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수익적 지출 :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 즉시손금(필요경비) 산입범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 6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 31⑥, 소득령 § 67⑦)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 가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구

〈개정이유〉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① 지정단계 보완(법인령 §39, 법인칙 §18의3)

종 전	개 정
<p>□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 정관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홈페이지 개설 (추 가) <p>□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p>□ 신청·추천기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강화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 국민신문고 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p>□ 지정기간 이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령 §39)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li style="text-align: right;">〈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사후관리기관자료요구근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령 §39)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이행사항 위반시 지정취소 가능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등 <li style="text-align: right;">〈추 가〉 □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통지) 국세청 → 주무관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 주무관청 → 국세청 <li style="text-align: right;">〈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이행사항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세청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반사항 적발시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종 전	개 정
<p>□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p> <p>*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손금(필요경비) 산입 • 1,0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p>□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p> <p>• 1,000만원 → 1,500만원</p>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 50의2⑪·⑬, 소득령 § 78의3⑦ ⑨)

종 전	개 정
<p>□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p>□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동) • (임차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p>□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p>□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분부터 적용

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령 §56)

종 전	개 정
<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p> <p>① + (②×50%*, 80%**, 100%***)</p> <p>* 일반 비영리법인</p> <p>**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p> <p>***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 사업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등</p> <p>①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 100%</p> <p>–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p> <p>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50%</p>	<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p> <p>①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p> <p>– 일시적 자금예치 → 3개월 이하 자금예치*</p> <p>*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p> <p>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p> <p>– 법정기부금</p> <p>* 매출누락, 횡령, 사적비용 등으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p>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 64⑥)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법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법인령 §97의4②)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70% 이상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②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령 § 106)

증 전	개 정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뿐 아니라 비지정기부금, 기부금 귀속시기 등으로 손금 불산입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 기부금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이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19.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법인령 § 120의20)

증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개정이유〉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 10의4)

증 전	개 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추 가〉	□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21.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법인칙 § 35)

종 전	개 정
<p>□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p>□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1017호 → 제1116호로 개정

〈개정이유〉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개정이유〉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 44)

종 전	개 정
<p>□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추 가) 	<p>□ 제외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조특법 § 8의3)

종 전	개 정
<p>□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2.12.31.
<p>□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 시험용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취득가액의 3%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2.12.31.
<p>□ 내국인이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 연구시설 등에 투자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투자금액의 1% (중견 3%, 중소 7%)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2.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 13)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p> <p>*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지방식) 직·간접 출자 • (적용기한) '20.12.31. 	<p>□ 비과세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舊株) 인수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p style="text-align: right;">] (좌 동)</p>

<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의2)

종 전	개 정
<p>□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법인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지원내용) 출자금의 5%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기한 연장</p> <p style="text-align: right;">]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31.

<개정이유>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

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3의3, 조특령 §12의3)

종 전	개 정
<p>〈신 설〉</p>	<p>□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 공동출자 : ①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MOU)에 따라 투자할 것, ②공동투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을 각각 납입할 것 • (출자범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 (세액공제율) 지분 취득가액의 5% •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공제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 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인력개발비(조특법 §10조),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조특법 §25조①1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조특법 §25①6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조특법 §25의5)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지분 처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이 경우는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13의3, 조특령 § 12의3)

종 전	개 정
<p>〈신 설〉</p>	<p>□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 주식 지분취득 또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자산양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②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인 경우는 제외 ** 특정 소재 부품 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소재 부품 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한도(건당) :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 최근 3년내 동일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부문을 여러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 적용 •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사후관리)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 * 기준비율(50% 또는 30%+경영권)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액공제액 전액, 기준비율 이상 유지되면 줄어든 비율 상당액을 추징 •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M&A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6.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3, 조특령 §25의3)

종 전	개 정
<p>□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 (대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 •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 시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 가> <추 가> • (적용기한) '19.12.31. 	<p>□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75% - (좌 동) • 대기업의 대상자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생산성향상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 '20.6.30.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상각률 범위 및 대상자산 확대) '19.7.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38의2)

종 전	개 정
<p>□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1.12.31. 	<p>□ 거치 분할 납부방식으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세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22.1.1.~'24.12.31.

<개정이유> 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현물출자하거나주식을교환하는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21.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8.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8)

종 전	개 정
<p>□ 공모리츠*에 토지·건물 현물 출자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p> <p>*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사후관리)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기한 연장</p> <p>(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31.

〈개정이유〉 공모리츠 활성화 지원

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조특법 §100의32①, 조특령 §100의32②)

종 전	개 정
<p>□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시행령)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 	<p>□ 적용제외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 (좌 등)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톤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4의10)

종 전	개 정
<p>□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 = $\Sigma(\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1\text{톤당1운항일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 -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의 무적용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기한 연장</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11.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종 전	개 정
<p><신 설></p>	<p>□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법§47의2 우수 선화주인증 •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②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 (세액공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수출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 공제한도 : 소득 법인세의 10% 범위

<개정이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조특령 § 64①)

종 전	개 정
<p>□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소득의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월수/12) 	<p>□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월수/12) • 그 외 소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월수/12)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조특칙 §45의9)

종 전	개 정
<p>□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차감항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개정이유〉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분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조특칙 §2)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요건의 기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 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 매출액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매출액 :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2.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법 §2, 조특령 §1의2)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개념(법 §9),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영 §8) •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개념(법 §2),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영 §1의2) 이관 • (좌 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3.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④)

종 전	개 정
<p>□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 • (공제율) 중소 3%, 중견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 중소 10%, 중견 5%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1.12.31. 	<p>□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p> <p>*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며 투자시 : 중소 10%, 중견 5%</p> <p>※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원

〈적용시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④)

종 전	개 정
<p>□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 • (공제율) 중소 3%, 중견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 중소 10%, 중견 5% 	<p>□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p> <p>*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 특구사업자*가 투자시 :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

〈개정이유〉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적용시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4②)

종 전	개 정
<p>□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등은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즉시상각 적용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개정이유〉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조특령 §5)

종 전	개 정
<p>□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감면율) 5년간 50~100% •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p>□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좌 등)</p> </div> <p>- (좌 등)</p>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운송업 • 화물터미널 운영업 •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②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 물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 화물터미널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좌 등)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	--

〈개정이유〉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 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9②)

종 전	개 정
<p>□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R&D :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 서비스 R&D : 자체 R&D 비용 <p>〈추 가〉</p>	<p>□ 서비스 R&D에 대한 위탁·공동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p>-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p>

〈개정이유〉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제연도 분부터 적용

8.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법 §10, 조특령 §9)

종 전	개 정
<p>〈신 설〉</p>	<p>□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 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1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 ②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 ③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 (배제 시점) 배제사유(①②③)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②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③ 인정취소일

〈개정이유〉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9.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p>□ 인력개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개정이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8)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p>□ 공동·위탁 R&D 수행기관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p>□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11.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종 전	개 정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대 분야 173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융복합 소재 관련 기술 등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11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기술 신설, 14개 기술 적용범위 확대 * 예)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 운전자생체데이터 분석기술, 6G 기술 등 ②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기술 신설* * 예)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제조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조특칙 §7)

종 전	개 정
<p>□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p> <p> 【① 임상1·2·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p>•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기업</p> <p>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p> <p>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②준용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조특칙 §8의3)

종 전	개 정
<p>□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은 2,000만원 •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 ② 건설 중인 자산 ③ 무형고정자산 	<p>□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①과 ②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소재·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 (좌 등)

〈개정이유〉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투자누계액 대상 명확화

1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등(조특법 § 25, 조특령 § 22의5, 조특칙 별표2)

종 전	개 정																						
<p>□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body> </tabl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p>□ 공제율 한시 상향, 대상 명확화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한시 상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기간</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① '20년 투자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② '21년 투자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③ ②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body> </table> • (대상 명확화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클라우드 서비스,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 물류자동화설비등첨단물류시설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	--

〈개정이유〉 투자유인 증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확대
 〈적용시기〉 (대상 확대) '20.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5, 조특령 § 22의5, 조특칙 § 13의5, 별표 5의2~5의5)

종 전	개 정
<p>□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급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포함 <li style="text-align: center;">〈추 가〉 - 「비상대비자원법」에 따른 보강시설 및 내진보강시설 - 위해요소방지시설 - 광산보안시설 - 기술유출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시설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19.12.31. 	<p>□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열수송관·송유관, LPG·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 (좌 등) - (좌 등) - '광산안전시설'로 명칭 변경 - 〈삭 제〉 - 〈삭 제〉 • (좌 등) • '21.12.31.

〈개정이유〉 폭발·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을 정비

〈적용시기〉 (대상 추가) '20.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5의4, 조특칙 § 13의7, 별표8의10)

종 전	개 정
<p>□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 (적용기한) '19.12.31. 	<p>□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 (좌 동) • '21.12.31.

〈개정이유〉 첨단 제약산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 조정
 〈적용시기〉 (대상 조정)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 8의8)

종 전	개 정
<p>□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개 시설 열거 (추 가) 	<p>□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개 시설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

〈개정이유〉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

(조특법 §25조의6, 조특령 §22의10)

종 전	개 정
<p>□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p>* (시행규칙 §13의9)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2.12.31. 	<p>□ 적용대상으로 오락프로그램 추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프로그램* <p>*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19.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22의11)

종 전	개 정
<p>□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 (공제대상)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 <p>* 조특령 별표7(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2% + 최대 1% • (적용기한) 2020.12.31. 	<p>□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 <p>*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조특령 §4③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29의3①, 조특령 § 26의3)

종 전	개 정
<p>□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12.31. 	<p>□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21.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조특령 §26의5)

종 전	개 정
<p>□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위반**에 따른 추정세액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29세 이하인 자) 정규직근로자 수 증가 시 300~1,000만원 세액공제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정 • (추징세액) ①~③ 중 가장 큰 인원×300~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p>□ 추정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간주되는 기준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

〈개정이유〉 추징세액 계산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 보완

〈적용시기〉 '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3.6% → 3.8%

〈개정이유〉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조특법 §29의7①·②, 조특령 §26의7)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대기업</th> </tr> <tr> <td></td> <th>수도권</th> <th>지방</th> <td></td> <td></td> </tr> </thead> <tbody> <tr> <td>청년* 상시</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r> <td>청년 외 상시</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 해 공제분
-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액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 ※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규정 준용
-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적용기한) '21.12.31.
-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i)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상시근로자 감소인원×청년등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해당 공제액
 - ii)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 그 초과인원×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既추징세액은 차감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좌 동)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세액) '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0의2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9.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이전에는 전년도 6.30. 기준 •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지원

25.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31.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26.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7의4)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 (공제액)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div>	<p>□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간 → 해당 과세연도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p style="text-align: center;">-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p> </div>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
 〈적용시기〉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20.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조특령 §60의2)

종 전	개 정
(신 설)	<p>□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계산시 상시근무인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을 포함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개정이유〉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명확화

2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85의2③)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제외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p style="text-align: center;">〈폐 지〉</p>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준공(17년) 등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적용시기〉 '20.1.1. 이전에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9.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조특법 § 85의6①·②)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 상시근로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고용중대세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동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임원 및 최대주주와 그의 직계존비속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동일 <li style="text-align: center;">— <li style="text-align: center;"><u>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u>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2.12.31
---	---

〈개정이유〉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등 (조특법 § 96, 조특령 § 96)

①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조특법 § 96)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1년부터 20% / 50%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대개시일 명확화(조특령 § 96)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개시일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개정이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명확화

③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조특령 § 96)

종 전	개 정
(신 설)	<p>□ 감면금액 산출 방법</p> <p>①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p> <p>②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p> <p>* 임대시점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산</p>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 산정방법 명확화

④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조특령 § 96)

종 전	개 정
<p>□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 일 것 <p style="text-align: center;">(후단 추가)</p>	<p>□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료 증가율 계산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비율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p>*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④,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③</p>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1.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99의9②)

종 전	개 정
<p>□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p> <p>* 고용위기지역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적용기한) '21.12.31. 	<p>□ 감면기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2.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조특법 §104의8)

종 전	개 정									
<p>□ 전자신고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 건당 1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104의5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19~'20년</th> <th>'21년이후</th> </tr> </thead> <tbody> <tr> <td>세무대리인</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세무대리법인</td> <td>75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19~'20년	'21년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p>□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 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 등 300만원, 세무법인 등 750만원
구 분	'19~'20년	'21년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개정이유〉 특례 주요내용 법률에 직접 규정

33.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의18)

종 전	개 정
<p>□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p>* 대 중견 중소기업: 1 3 7%</p> <p>• (적용기한) '19.12.31</p>	<p>□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 최근 감면실적 : ('15) 0.36억원 ('16) 1.58억원 ('17) 1.24억원

3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조특법 § 104의24)

종 전	개 정
<p>□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시 •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p>• (적용기한) '19.12.31.</p>	<p>□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p>• '22.12.31.</p>

〈개정이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1의22)

종 전	개 정
<p>□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9.12.31. 	<p>□ 적용기한 연장</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개정이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지속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조특법 § 121의22, 조특령 § 116의27)

종 전	개 정
<p>〈신 설〉</p>	<p>□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 *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7.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6의7)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금지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 • (공제금액) ①과 ②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출세액×(전년대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증가액/매출액) ② 산출세액×(금현물시장이용금액의5%/매출액) •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 최근 감면실적 : ('15) 0.73억원 ('16) 0.23억원 ('17) 0.07억원

38.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조특법 §132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100%, 2년 50% 감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 (최저한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율에 관계없이 지역특구 제도별로 최저한세 적용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구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기간 - (최저한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50%) 감면기간

〈개정이유〉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조특법 §142)

종 전	개 정
<p>□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 300억원(조특령 §135⑥) • (면제요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 예비타당성평가면제요건(조특령§135⑦) 	<p>□ 예비타당성평가 평가대상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상향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 (면제요건) 법률에 상향입법하되,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요건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③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0.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조특령 §135)

종 전	개 정
<p>□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p> <p>* 당해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조특법§14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원대상의 소멸 ②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경우 	<p>□ 면제요건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경우

〈개정이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축소(3년 → 2년)

〈적용시기〉 '20.2.11.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분부터 적용

4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조특법 § 144①)

종 전	개 정
<p>□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 (이월공제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좌 동)</div> <p>-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 10년</p>

〈개정이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3 2020년 귀속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안)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개 정 안																																																																	
<p>□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중소기업</th> <th colspan="3">중견기업</th> </tr> <tr> <th>위기 지역</th> <th>신규 상장</th> <th>일반</th> <th>위기 지역</th> <th>신규 상장</th> <th>일반</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10%</td> <td>4%</td> <td>3%</td> <td>5%</td> <td>4%</td> <td>2% (수도권 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중소 기업</th> <th>중견 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td> <td>7%</td> <td>3%</td> <td>1%</td> </tr> <tr> <td>② 에너지절약시설</td> <td>7%</td> <td>3%</td> <td>1%</td> </tr> <tr> <td>③ 환경보전시설</td> <td>10%</td> <td>5%</td> <td>3%</td> </tr> <tr> <td>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10%</td> <td>5%</td> <td>3%</td> </tr> <tr> <td>⑤ 안전시설</td> <td>10%</td> <td>5%</td> <td>1%</td> </tr> <tr> <td>⑥ 생산성향상시설*</td> <td>7% (10%)</td> <td>3% (5%)</td> <td>1% (2%)</td> </tr> </tbody> </table> <p>*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6%</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10%</td> <td>7%</td> <td>5%</td> </tr> </tbody> </table>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 1%)	구 분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③ 환경보전시설	10%	5%	3%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⑤ 안전시설	10%	5%	1%	⑥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p>□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2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p>- ① 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p> <p>-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중설투자 등</p> <p>※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p>-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p>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 1%)																																																													
구 분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③ 환경보전시설	10%	5%	3%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⑤ 안전시설	10%	5%	1%																																																																
⑥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⑨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7)

구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추가공제(㉔))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의5, 조특령 §22의9)

현행	개정안
<p>□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② 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③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p>□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제요건 폐지] (좌 동)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144①)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 • (이월공제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li style="margin-left: 40px;">] • 10년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13·§76의13, 소득법 §45)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 소득의 60% - 중소기업·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 소득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 15년 • (좌 등)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p>□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p>□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현 행	개 정 안
<p>□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환류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적용기한) '20.12.31. 	<p>□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좌 등) • 임금증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등)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22.12.31.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7)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개 정 안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같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u>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u>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u>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u>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u>매년 6월말까지</u>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u>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u> •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u>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u>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시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 (좌 동)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